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해마다 12월이 되면 봉급생활자들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그해 내야할 세금액수를 확정한다. 이 확정세액과 그동안 매월 나누어 낸 세금의 합계와 비교하여 적게 냈으면 마지막 월급을 받을 때 추가 납부하고,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급여 또는 상여에서 갑근세를 납부한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을종근로소득과 구별된다. 매월 납부하는 세액은 소득자의 급여수준과 기혼·미혼 등 기초적인 인적사항만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 만든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잠정과세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소득자별로 과세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바, 각종 공제혜택을 잘 받는 것이 봉급생활자들이 갖는 유일한 節稅 기회이다.

봉급외에 거액의 이자, 배당, 부동산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금이자 또는 소액주주로서 받는 주식배당금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은 따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계산구조	기본요건	공제액	필요서류
급여금액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수입금액 (총급여액)			
(-) 필요경비적공제			
보험료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 본인,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50만원 한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액 <5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의료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한약포함) 구입에 지급하는 비용중 총급여 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 (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 정밀 건강진단비등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원 한도 (장애인 자재활의료비 또는 경로우대자 의료비 있을 시 한도초과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영수증(환자명, 병명 기재하고 발행자의 별도 서명 날인 있는 것)
교육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학자금(대학원 제외) ◦ 자녀 및 2인이내 형제자매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액 (초·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납입증명서
무주택근로자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총급여가 1200만원 이하인 근로자중 올해 주택을 보유한 사실 이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현재 및 직전주소지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맞벌이부부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 있는 여성근로자 (남편의 소득유무와 관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4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근로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0만원 + 270만원 초과하는 총급여액의 30% (620만원 한도) 	
근로소득금액			

계산구조	기본요건	공제액	필요서류
(-) 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	연납입보험료 (특약보험료제외)의 40%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납입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없음.)
↓ 과세표준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 모든 근로자	72만원	○ 소득공제신고서
X 기본세율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 액이 54만원 이하일 것	54만원	
↓ 산출세액	○ 60세(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또는 20세 이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부 양 가족의 연간소득금액 합계 액이 48만원 이하일 것 (장애 자가 부양가족일 경우 연령제 한 없음)	1인당 48만원	
장애자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세대주공제 기부금특별공제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자 일 것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 남편없는 여성근로자로서 세대주일 것 ○ 법정기부금(방위성금, 국공립 학교기부금, 이재민구호성금 등) ○ 지정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종교단체에 대한 현금 등)	1인당 54만원 1인당 48만원 54만원 전액 〈연소득금액의 5% 한도	○ 상이증명서, 장애인수첩 사본, 장애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세액공제 및 감면	근로소득공제 ○ 모든 근로자	산출세액 × 20% (50만원 한도)	
↓ 결정세액	저축세액공제 ○ 재형저축에 가입한 자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한 자	저축액의 15% 저축액의 10%	
(-) 기납부세액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임차 당시 월급여 60만원 이하인 자가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경우	연상환액의 10% (15만원 한도)	○ 공제신청서, 주택자금상환액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연말정산 납부 또는 환급세액	우리사주취득세 세액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조합에 저축하거나 대여금을 상환하는자	저축금액의 15% (7월 이후 세액공제분에 대하여 공제세액의 10% 차감)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그 이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 또는 치유 전의 상황에 의한다.

〈鄭元俊〉